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601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4월 15일

국무총리 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의 개정)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기반정책관”을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 제도정책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장”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으로,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를 “외교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4조(「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의 개정)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다목 중 “내무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의 개정)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조제1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안전행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을 각각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6조(「국가경쟁력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제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가경쟁력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제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 차관”으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제7조(「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기획관”을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규정」의 개정)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을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으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교육부 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관”을 “교육부 대학정책관”으로 한다.

제9조(「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의 개정)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표 8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처별 소관사항

부처명	소 관 사 항	비 고
안전행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기 보급 및 선양 계획 수립·총괄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에 대한 지도·지원 ○ 공공기관의 국기 게양 및 관리 실태 점검 ○ 국가상징 선양사업 추진 및 우수기관(개인) 포상 실시 ○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기 달기 계획 수립·통보 - 관보에 국기 달기 홍보 - 정부청사(중앙·과천·대전) 국기 달기 안내 방송 실시 및 전광판 홍보 	각급 기관 및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상징 선양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일 계기 특집방송 프로그램 제작 - 공익방송 및 공익광고 등 활용 ○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언론사(방송·신문)에 국기 달기 홍보 협조 요청 · TV 방송 진행자 코멘트 협조 · TV 자막 방송 - 옥외 전광판 및 케이블TV를 이용한 국기 달기 홍보 등 ○ 문화CI, 관광CI에 국기 등 국가상징 문양 활용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상징 문양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보급 등 ○ 각급 관광호텔의 매일·24시간 국기 게양 권장 	방송사 및 언론사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국기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기의 뜻과 유래, 국기 게양방법 등 교육 - 그림 그리기, 글짓기 등 활용 - 게양·강하식에 학생 참여 - 각급 학교 교과과정에 국기에 관한 내용 반영 ○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전파 · 부모님과 함께 국기 달기 참여 유도 · 국기 달기 ‘가정통신문’ 발송 · 국기 달기에 대한 소감문 발표 유도 	각 시·도 교육청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에 상설 국기 판매대 설치 및 통신판매 확충 ○ 민간기업체의 고객사은품으로 국기 증정 권장 ○ 생활용품 및 학용품 등에 국기 등 국가상징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 ○ 각 기업체의 고객 사은품·기념품으로 가정용 국기 증정 권장 ○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업체의 사보 및 신문광고 등에 국기 달기 홍보 문안 삽입 권장 	경제 5단체 및 전국은행연합회
미래창조과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및 우체국판매 상품카탈로그를 통한 태극기 판매 홍보 	우정사업본부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호텔, 대형건물, 경기장 등에 게양대 설치 및 게양대 간 간격 확보 ○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주게양대 설치 ○ 국제공항 등에서의 매일·24시간 국기 게양 ○ 터미널·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국기 게양 ○ 단독 및 공동주택 신축 또는 증·개축 시 국기꽂이 설치 확인점검 ※ 근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 ○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전철 구내방송을 통한 국기 달기 홍보 안내 방송 실시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구·선박 등의 매일·24시간 국기 게양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귀화 시 국기 증정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공관 「재외동포 국기 나눠주기 운동」 추진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24시간 게양에 따른 태극기 재질기준 제고 ○ 가로기의 조달 물품화 추진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게양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할인마트·백화점·호텔·시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드나드는 장소 - 광역자치단체 청사의 울타리기, 시·군·구의 도로변 및 농촌마을 입구의 군집기 등 - 운동장·공원 등 다중집합시설의 국기게양대 ○ 국기의 대형화와 게양위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건물에 걸맞는 대형 국기 게양 - 국기가 잘 보이도록 건물 형태별 게양위치 조정 - 대형국기에 걸맞는 게양대 설치 및 게양대 간 충분한 간격 확보 ○ 일선 행정기관의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등 ※ 건물용·가정용 국기 비치 ○ 백화점 등 상업시설에 국기판매 권장 ○ 신축건물에 대한 국기꽂이 설치 제도 ○ 주된 국기게양대가 없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 국기게양대 설치 제도 ○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국기꽂이 설치 대책 수립·시행 ○ 노후된 게양대 및 깃봉의 도색 등 주기적 정비 실시·제도 ○ 오염·훼손된 국기의 신속한 교체 실시·제도 ○ 현행 V자형 꽂이를 가급적 배너형 꽂이로 교체 또는 V자형 꽂이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 혼인신고 또는 전입신고 시 국기세트 선물 증정 권장 ○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홍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홍보 기능을 활용, 국기 게양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반)·리장 등 일선 조직을 활용 각 가정 국기달기 독려 · 아파트단지·상가 밀집지역 등에 홍보 유인물 배포, 게시판 부착, 안내 방송 실시 ·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설치 권장 - 택시·버스 등 차량에 국기 달기 운동 전개 - 지역방송매체 및 지하철(버스)내 홍보 방송 실시 - 관내 주요 도로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되거나 훼손된 국기가 게양되거나, 깃면이 거꾸로 게양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철저 · 게양된 가로기의 깃대가 부러지거나 깃면이 오염·훼손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 실시 	

제11조(「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국제범죄대책협의회 규정」의 개정) 국제범죄대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를 “교육부·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3조(「국회 서면질문서 처리 지침」의 개정) 국회 서면질문서 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가목을 삭제한다.

제14조(「기부·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기부·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5조(「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6조(「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대통령실장 및 대통령실장이 지명하는 대통령실 소속”을 “대통령비서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명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한다.

제17조(「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의 개정) 대통령지시사항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6조 단서,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제3항 중 “대통령실장”을 각각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 제16조 단서, 제18조제2항·제3항 및 제19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지시사항 사업분야별 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제2항 관련)

코드번호	분야항목	내용	주관기관(예시)
01	통일·안보·정치	정치·선거·외교,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 국방, 안보, 보훈, 민방위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국가보훈처
02	경제	경제발전, 재무금융, 통상, 산업, 에너지 자원, 농·축·수산, 사회간접자본, 국토종합개발, 교통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03	사회·복지	사회질서, 보건위생, 방역, 근로조건, 직업안정, 환경, 노인·청소년문제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04	교육·문화	교육, 문화예술, 관광체육진흥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05	과학·기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06	일반행정	지방행정, 공무원복무, 민원처리, 대국민홍보, 안전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법제처, 국무총리비서실
07	기타	감사, 그 밖에 다른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감사원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지시사항 주관기관별 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제2항 관련)

기 관 명	기관번호	기 관 명	기관번호	기 관 명	기관번호
국무조정실	01	공정거래위원회	31	농촌진흥청	81
감 사 원	02	금융위원회	32	산 립 청	82
국가정보원	03	국민권익위원회	33	중소기업청	83
국무총리비서실	04	방송통신위원회	34	특 허 청	84
		기타	35	해양경찰청	86
기획재정부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7
통 일 부	12	법 제 처	41	방위사업청	88
외 교 부	13	국가보훈처	42		
법 무 부	14	식품의약품안전처	43		
국 방 부	15				
안전행정부	16	광역자치단체	60		
교육부	17				
문화체육관광부	18	수개기관 공통	70		
농림축산식품부	19				
산업통상자원부	20	국 세 청	71		
보건복지부	21	관 세 청	72		
환 경 부	22	조 달 청	73		
고용노동부	23	통 계 청	74		
여 성 부	24	검 찰 청	75		
국토교통부	25	병 무 청	76		
미래창조과학부	26	경 찰 청	77		
해양수산부	27	소방방재청	78		
		기 상 청	79		
		문 화 재 청	80		
※ 그 밖의 대통령직속기관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별도 관리					

제18조(「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의 개정)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를 “교육부·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청·해양경찰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장”으로, “보건복지부 소속”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9조(「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의 개정) 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다목·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가. 국무조정실

다. 농림축산식품부

라. 산업통상자원부

바. 국토교통부

사. 해양수산부

제21조(「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8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2조(「외국 주요인사 접촉기록의 관리 및 공유에 관한 규정」의 개정) 외국 주요인사 접촉기록의 관리 및 공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 차관 및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을 “장관 및 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3조(「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및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항·제4항 및 제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을 각각 “안전행정부 재난관리국장”으로 한다.

제25조(「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6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의 개정)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를 “교육부·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7조(「정부합동안전점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정부합동안전점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을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으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8조(「정부 항공운송 의뢰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1조 및 제1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를 “교육부·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의 국정운영실장”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으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30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1조(「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2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춘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의 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춘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I. 관계 기관 등 조치사항의 제3호가목1)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행정안전부 및 농림수산식품부”를 “안전행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3조(「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의 개정)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시행)으로 종전의 국무총리실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명칭과 기능이 변경·조정되는 등 일부 부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34개 국무총리훈령에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3-792호

2004년 1월 30일 런던 총회 결의로 채택되고, 전회원국이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이를 수락하여 2006년 10월 15일에 발효된 “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 제1조 개정”이 동 2006년 10월 15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었으므로 이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외 교 부 장 관

(한글번역문)

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 제1조 개정

제 1 조

목 적

경제발전과 부흥에 기여함에 있어서 은행의 목적은 복수정당제 민주주의, 다원주의 및 시장경제원칙을 채택하고 적용하는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들에 있어서 개방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기업가적 창의성을 증진하는 데에 있다. 은행의 목적은 동일한 조건의 지배를 받는 몽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협정문과 부속서에서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들, 수혜국(수혜국들) 혹은 수혜회원국(회원국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또한 몽고를 언급하는 것이다.

Amendment to Article 1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rticle 1

PURPOSE

In contributing to economic progress and reconstruction, the purpose of the Bank shall be to foster the transition towards open market-oriented economies and to promote private and entrepreneurial initiative i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committed to and applying the principles of multiparty democracy, pluralism and market economics. The purpose of the Bank may also be carried out in Mongolia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Accordingly, any reference in this Agreement and its annexes to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Countries from Central and Eastern Europe", "recipient country(countries)" or "recipient member country(or countries)" shall refer to the Mongolia as well.